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 획 변경계 획（제3차）안 심사보고서

| 의안 번호 | 753 |
| :--- | :--- |

2005년 6월 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

1．심 사 경 과
가．제안일자 및 제안자 ：2005년 6월 10 일 서울특별시장 제출
나．회부일자 ：2005년 6월 13일
다．상정일자 ：제 28 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 2 차 행 정자치위원회 （2005년 6월 23일 상정）
2．제안설명의 요지
（제안설명자 ：재무국장 이 봉 화）
가．제안이유
－지방재정법의 제 77 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 조 제 1 항에 의거 제 153 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춰득 1 건，건물 신 • 증축 23 건，처분 1 건을 추가하고자 본 변경계획안을 수립，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자 하는 사안임．
3．재산관리계획 현황
－추 득（24건）
－신축 및 증축（23건）
－건물 $184,832 \mathrm{~m}^{2}, \quad 353,482,046$ 천 원
－매 입（1건）
－토지（1건）： $84,670 \mathrm{~m}^{2}, \quad 276,310$ 천 원
－처 분（1건）
－매 각（1건）
－토지（1건）： $6,998 \mathrm{~m}^{2}, \quad 710,924$ 천 원
3．전문위원 검토보고
（전문위원 ：이청수）
$\square$ 검토요지
가．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25 건으로 많은 사유에 대하여
－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（3차）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법령을 준수하 고 예산과정에 부합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반도록 지난 제 156 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관리부서인 재산총괄관이 시 전체를 파악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．
－이 중 서부노인요양센터 등 6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것이며 누락되었다가 제출 된 것은 17 건이고 나머지 2 건은 2005 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취득할 토지와 중랑구에 매각할 토지임．
－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 재산취득（건축물 신축 등）현황을 $2003^{\sim} 2005$ 년도 예산서에서 토지매입비 및 건축물 신축 등 내역을 발췌하여 해당부서 통보하여 파악한 결과 제3차 변경계획 반영 23 건，관리계획 기 반영 6 건，관리계획 비 대상（손실보상 등） 18 건，중복사업（계속비） 12 건， 2004 년 이전 사업완료 25 건，기타 （사업취소，사업 미추진） 7 건으로 파악되었는데，
ㅇ 이 중 2004년 이전 사업완료 된 25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숭인을 받 지 않은 것으로
이이방재정법 제 77 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 조 제 1 항에 의거 공유재산관 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에는 행정재산

으로 등재되어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．
나．공유재산 심의 회 심의에 대하여
ㅇㅈㅈㅂ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춰득 및 처분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서울특별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설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반도록 되어 있으나
ㅇㅇㅇ번에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변겅계획（3차）안에 포함된 25건 중 제3공무 원수련원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매입하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480 외 15 필 지 $84,070 \mathrm{~m}^{2}$ 의 토지와 중랑문화체육관 건립을 위해 중랑구에서 매각 요청한 시유지 3 필지 $6,998 \mathrm{~m}^{2}$ 를 중랑구청장에게 매각하는 2 건만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 의를 거 쳤을 뿐 임．
ㅇㄴㄴ머지 마포구 성산동 $369-2$ 외 13 필지에 건 립중인 서부노인전문요양 센터 등 건축물 을 신 • 증축하는 23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 의 를 생략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 78 조 및 서웉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7 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의 춰 득 • 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 의회의 심의 를 하여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． 다．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（안）의 내용분석（세부내역－별표1）

ㅇ공유재산관리 계 획변겅 계획（제3차）안 중 건축물 신 ．증축에 따른 취득 공유재산은 23 건으로 이미 준공된 것이 4건，2005년도 준공 7건，2006년 준공 6건，2007년도 이후 준공예정이 6 건이며 건축물 신축공사를 2002 년 이전부터 시작한 것도 10 건에 이르고 있음．
ㅇ건축물의 사용 목적별로 분류하여 보면 노인복지센터 6건，청소넌수련관 6건，병원시 설 4건，학교시 설 4건，자 원회수시설 1 건，체육시 설건 립 1 건，농업기술센터 1 건 등으로 주로 노인，청소년，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，학교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．
에 제3공무원수련 원 건 립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15 필지 $84,670 \mathrm{~m}^{2}$ 로 12 명으로부터 276 백 만원（공시지가 기준）에 충주시로 하여금 위탁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2005년도 추 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에 반영한 것임．
이중랑문화체육관 건립을 위해 중랑구 청장이 매각요청한 시 유지 3 필지 $6,998 \mathrm{~m}^{2}$ 의 토지 는 당초 시에서 용마산 면목약수터지구 공원내 중랑여성문화회관 건 립 계획에 의거 매입하였으나 중복투자로 인해 2002． 12 월 건립계획이 춰소됨에 따라 중랑구에서 다 목적 체육센터 기능을 수행할 문화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매각 요청한 것으로써 2003년 1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지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지상 1 층 슬라브 공사 가 진행중에 있음．

## $\square$ 결 론

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은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된 6 건을 포함하여 23 건은 기 정사실 에 대한 것이고 토지매입 1 건과 매각 1 건에 대하여 실 질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임．
ㅇ공유재산의 춰득 • 처분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7 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춰득부분 특히 건축물의 신 증 축에 의한 춰득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경유하지 않았는바 다음 변 경 계획안부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경유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
ㅇ 중랑문화체육관 건립을 위해 중랑구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미 2003년 11월부터 시유지 를 무단 점유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등 시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 되었는 바 감사관으로 하여금 관리실 태를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임．
으아울러 매각하여야 할 공유재산 중 아직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반지 않은 건에 대하여

도 일제히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．
－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（제 3 차）안에 포함된 건축물의 신•증축관련 23 건에 대 하여는 이미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만 예산심의 심사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임．
4．질의 및 답변요지
ㅇ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만 예산심의심사대상에 포 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경영기획실과 협의
－매각대상 토지 중 시의회 승인건에 대해 파악하여 일괄 신청
5．토 론 요 지 ：없 음
6．심 사 결 과 ：원안가결（재석위원 8명，전 원일치）
7．소수 의견의 요지
ㅇ향후 공유재산의 춰득 및 처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（예산과）과 협의
8．기타 필요한 사항 ：없 음

